

의안번호	2212740
의 퇴 인	송기헌의원
회 답 일	2025. 12. 2.
추 계 번호	25B48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25억 2,100만원(연평균 45억 4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안 제35조의18)	9,919	6,540	4,388	—	1,674	22,521	4,504

주: 국토교통부의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시스템 구축 계획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신설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말한다)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함. 다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35조의14(성능평가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등)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구동축전지 성능평가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3	안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신설	전기자동차등에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여 판매 또는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검사(이하 “유통전 안전검사등”이라 한다)를 받아야 함(제1항) 1.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유통전 안전검사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재제조 배터리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제4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제6항)	의무규정
4	안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의 생산,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결과 및 재제조 배터리의 장착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제6항) <u><신설> 5. 제35조의18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u>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신설	—	•미대상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업무를 대행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수수료¹⁾를 받아 운영될 계획이므로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등의 안전점검 기법 및 체계 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5</th><th>'26(안)</th></tr><tr><td>사용후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유통 순환 기술개발</td><td> — 사용후배터리 3단계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유통 전 안전검사, 사후검사 각 단계별 기술 개발) 안전점검 체계 고도화 기술 — 재제조 배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안전관리 기술 개발 등 </td><td>2,400</td><td>6,000</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사업명	사업개요	'25	'26(안)	사용후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유통 순환 기술개발	— 사용후배터리 3단계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유통 전 안전검사, 사후검사 각 단계별 기술 개발) 안전점검 체계 고도화 기술 — 재제조 배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안전관리 기술 개발 등	2,400	6,000
사업명	사업개요			'25	'26(안)						
사용후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유통 순환 기술개발	— 사용후배터리 3단계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유통 전 안전검사, 사후검사 각 단계별 기술 개발) 안전점검 체계 고도화 기술 — 재제조 배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안전관리 기술 개발 등			2,400	6,000						
2	안 제35조의14(성능평가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등) 신설										
3	안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신설										
4	안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설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안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안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35조의18)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동축전지의 생산,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결과 및 재제조 배터리의 장착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2024.7.)에 따라 구동축전지의 생산,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결과 및 재제조 배터리의 장착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등,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1. ~ 10의4. (생략)

10의6.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

10의7. 제35조의16제1항에 따라 유통전 안전검사등을 신청하는 자

11. ~ 18. (생략)

위한 ‘전기차 배터리 인증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²⁾하고 있으며, 2025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완료하였음

[표 2] 국토교통부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관리 시스템 ISP 수립 주요 내용

○수립 개요

- 용역명: 전기차 배터리 인증관리 시스템 ISP 수립 용역
- 수행기간: '25.6. ~ 10.(4개월)
- 소요비용: 223백만원

○수립 결과

-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 기능 구현, 내·외부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등 225억* 소요(5개년)
* (1~3년차) 시스템 구축비 208억(1년 99.2억 2년 65.4억 3년 43.9억), (5년차) 유지보수비 17억(4년차 무상)
- (시스템 기능)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제작자등이 이용하는 3개 시스템* 구축→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 등 업무 전 과정의 전산 처리 지원
* ①업무지원 시스템(교통안전공단), ②제조사 포털(자동차제작자등), ③관리자 기능
- (기타) 기존 자동차관리망,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내·외부 연계체계, 데이터 표준화 관리,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안체계 등 구축 추진

자료: 국토교통부

- 본 추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ISP 결과에 따른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안)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을 추계함

2) 국토교통부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관리 시스템’과 별개로, 산업통상부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정보 시스템(배터리 제조, 유통 및 재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통합환경정보시스템(전기차 보급, 충전 및 재활용) 구축을 추진 중이며, 구축 완료 후 통합포털로 3개의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임

[표 3] 국토교통부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관리 시스템 ISP에 따른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이행과제	연도별 구축비					합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 시스템 응용기능 구현	7,554	—	—	—	—	7,554
통합 DB 설계 및 구축	672	—	—	—	—	672
내부 연계체계 구축	766	—	—	—	—	766
룰 엔진 서비스 도입	—	664	—	—	—	664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서비스 구축	—	—	1,108	—	—	1,108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프로세스 정립 등	—	348	—	—	—	348
외부 연계체계 구축	—	923	—	—	—	923
감리 비용	436	—	—	—	—	436
PMO 비용	491	—	—	—	—	49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업무체계 구축	—	2,000	—	—	—	2,000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인증체계 구축	—	2,605	2,287	—	—	4,892
통계 시스템 구축	—	—	993	—	—	993
유지보수	—	—	—	—	1,674	1,674
총합계	9,919	6,540	4,388	—	1,674	22,521

자료: 국토교통부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25억 2,100만원(연평균 45억 4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4]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9,919	6,540	4,388	—	1,674	22,521	4,504

주: 국토교통부의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시스템 구축 계획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국토교통부의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시스템 구축 계획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